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병역명문가를 “3대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82조의3은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를 병역명문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여성의 군 복무가 포함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성뿐만 아니라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안 제2조제1호).

둘째,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중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호).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여성의 군 복무도 병역명문가로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성평등 가치 실현과 함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가문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